

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5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0. 07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08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가.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어도,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을 완화하고,
나.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용 시 ‘보조금 결제 전용카드’ 및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‘제로페이’ 사용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단서조항 및 교부조건 신설(안 제16조, 안 제17조)
-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사업정산 전까지 체납의 완납
나. 지방보조금 사용 시 ‘제로페이’ 사용 근거 마련(안 제19조의2)
-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체크카드)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를 사용하여야 한다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1) 기획감사담당관(법무개혁담당): 규제심사
- 2) 복지지원과(여성가족담당): 성별영향분석평가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182호
 - 가) 예고기간: 2019. 9. 3. ~ 2019. 9. 23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붙임

5. 본 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어도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,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용 시 “보조금 결제 전용카드” 및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“제로페이” 사용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해소하지 않을 시 대책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